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대상자에 대리인 추가
2. 면접조사 시 자료제출 요구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작 성 자	이름	진성림
	담당부서 (과)	감염병정책과		직급	행정주사보
	국장	홍정익		연락처	043-719-7130
	과장	하진		이메일	forest777@mail. go.kr

2024. 12. 18. 작성

감염병정책국장

홍정익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대상자에 대리인 추가																				
	2.규제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별표 1의3																				
	3.위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제정된 역학조사의 방법에 대해 역학조사의 대상 등 역학조사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 및 정비 ○(정부개입의 필요성) 정부는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역학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 제시 필요																				
	7.규제내용	○ 역학조사 중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대상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 - 영유아 등 직접 소통이 어려운 경우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함 - 면접조사 시, 시설 또는 기관의 관리자와 대리인까지 확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감염병 역학조사 대상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대리인과 감염병 발생 시설 또는 기관의 관리자 및 대리인</td><td>- 영유아, 노인 등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감염병 환자 * 23년 법정감염병 신고환자 기준(코로나19 포함, 표본감시 감염병 제외) · (0-9세) 273,102명 · (70세 이상) 796,234명 - 감염병 집단발생으로 면접조사가 필요한 시설 또는 기관 대상</td></tr></table>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td><td></td><td></td></tr></table>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td><td></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감염병 역학조사 대상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대리인과 감염병 발생 시설 또는 기관의 관리자 및 대리인	- 영유아, 노인 등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감염병 환자 * 23년 법정감염병 신고환자 기준(코로나19 포함, 표본감시 감염병 제외) · (0-9세) 273,102명 · (70세 이상) 796,234명 - 감염병 집단발생으로 면접조사가 필요한 시설 또는 기관 대상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감염병 역학조사 대상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대리인과 감염병 발생 시설 또는 기관의 관리자 및 대리인	- 영유아, 노인 등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감염병 환자 * 23년 법정감염병 신고환자 기준(코로나19 포함, 표본감시 감염병 제외) · (0-9세) 273,102명 · (70세 이상) 796,234명 - 감염병 집단발생으로 면접조사가 필요한 시설 또는 기관 대상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9.규제목표	○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방법 중 설문조사, 면접 조사 대상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하여 영유아 등 직접 소통이 어 려운 경우 등 기존 면접조사 대상 부재 시 역학조사 방법을 구체화 하고, 원활하고 신속한 조사 수행으로 감염병 유행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규제의	10.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적정성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 ----- -----
<별표 1의3> 역학조사의 방법	<별표 1의3> 역학조사의 방법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1. -----
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가. -----
1) 설문조사	1) -----
가) 설문조사는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 설문조사는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u>또는 대리인을</u>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면접조사	2) -----
가) 면접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보건·위생·환경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 면접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u>관리자(보건·위생·환경 관리자를 포함한다)</u> <u>또는 대리인을</u> 대상으로 실시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코로나19 집단발생 시 확진자와 집단발생 시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하여 발생 규모 파악, 전파차단 조치 등을 실시하였음
 - 역학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영유아, 중증환자 등으로 직접소통이 어렵거나 집단발생 시설의 면접조사 대상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속한 역학조사 수행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학조사의 방법에 조사 대상자를 대리인까지 확대하여 신속한 역학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설문조사는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면접조사는 감염병 발생 시설 또는 보건·위생·환경 관리자 대상으로 실시
규제대안2	대안명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조사 대상자 확대
	내용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대상자에 대리인 추가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기존 조사방법을 유지	조사 대상과 직접 소통이 어려운 경우 신속한 역학조사에 한계
규제대안2	조사 대상과 직접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속한 조사 가능	조사 대상 확대로 조사의 부담이 증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입법예고 예정	

3. 규제목표

- 역학조사 대상과 직접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 대상을 대리인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역학조사의 신속성을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역학조사 대상 부재 시 또는 역학조사 대상자의 의사소통 불능 등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학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규정 신설에 따라 역학조사 대상 부재 시 또는 역학조사 대상자의 의사소통 불능 등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역학조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행 감염병예방법 상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에 적용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미준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시행 하도록 감염병 예방법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개정안에 대한 부처(안) 확정

2. 향후 평가계획

- 역학조사 대상자의 법적 근거를 확대한 것으로 별도 평가 불필요

3. 종합결론

- 역학조사 대상자 부재 시 또는 역학조사 대상자의 의사소통 불능 등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방법에 조사 대상을 대리인까지 확대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면접조사 시 자료제출 요구 신설								
	2.규제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별표 1의3								
	3.위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특정 기관 및 시설에서 코로나19 등 집단발생 시 해당 기관의 협조를 통해 직원 등 명단을 제출받아 선제검사 실시, 발생 규모 파악 및 전파차단 조치 등을 실시하였음 ○ 2010년에 제정된 역학조사 방법(시행령 별표1의3)에 대해 역학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실제 역학조사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필요 ○ 이에, 시행령 제14조 별표1의 3(역학조사의 방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에 따른 안정적 조사 체계 마련 필요								
	7.규제내용	○ 면접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명단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 코로나19 등 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발생 규모 파악 및 선제검사, 전파차단 조치 등을 위해 역학조사 방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에 따른 조사 체계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관리자 및 대리인</td><td>감염병 집단발병으로 면접조사가 필요한 시설 또는 기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관리자 및 대리인	감염병 집단발병으로 면접조사가 필요한 시설 또는 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관리자 및 대리인	감염병 집단발병으로 면접조사가 필요한 시설 또는 기관							
9.규제목표	○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등의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활동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명단 등 자료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역학조사 시 신속성 확보와 감염병 집단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체제로 운영·적용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미해당 해당						

			관련된 규제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현행과 동일)
<별표 1의3> 역학조사의 방법 2) 면접조사 가) ~ 다) 생략 라) <신설>	<별표 1의3> 역학조사의 방법 2) ----- 가) ~ 다) 생략 <u>라) 면접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명단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특정 기관 및 시설에서 코로나 19 등 집단발생 시 해당 기관의 협조를 통해 직원 등의 명단을 제출받아 선제검사 실시, 발생 규모 파악 및 전파차단 조치 등을 실시하였음
- 감염병 집단발생을 조기인지 하기 위하여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특정 공간, 특정 기간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명단 확인이 필수, 시설장에게 감염병의심자 명단 등 자료제출 의무 부과 필요
- 이에, 2010년 제정된 역학조사 방법(시행령 별표1의3)을 실제 역학조사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정하여 법적 근거에 따른 안정적 조사 체계 마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면접조사 시 환자 발생 기관 협조를 통해 감염병 의심자 명단 등 자료 제출 협조 요청
규제대안2	대안명	면접조사 시 자료제출 요구 신설
	내용	면접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명단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역학조사로 인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존 조사방법 유지	조사 대상 기관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적극 협조받기 어려워 전파 차단에 한계
규제대안2	조사대상기관 협조 여부와 관계 없이 감염병 의심자 명단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함	역학조사로 인한 자료 제출이 강제되므로 조사 대상 기관의 법적 부담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입법예고 예정	

3. 규제목표

-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등의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활동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명단 등 자료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신속성과 감염병 집단발생 시 미협조 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부과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역학조사 방법 중 면접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 명단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규정 신설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관리자 또는 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조사에서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역학조사에 미협조 기관이 없도록 정비하는 것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결핵예방법 및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결핵예방법」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 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그 밖의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역학조사반 구성, 업무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결핵예방법」 제10조의2(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명령)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협조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핵발생을 의심 또는 확인한 경우 해당 집단생활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3(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명령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필요한 결핵환자등의 접촉자 명단 제공
2. 다음 각 목의 조치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의 실시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나. 법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

라. 법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3. 그 밖에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